

제26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2026. 2. 2.

행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경 과

의안 제679호로 2026년 1월 19일 이성수 의원 외 5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6년 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청년상인의 창의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화·상품화 지원, 소통·교류 및 상생협력 활성화, 실태조사와 협력체계 구축, 홍보 및 평가·표창 등 종합적 지원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조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라. 청년상인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마. 청년상인 지원사업 및 업무의 위탁, 평가, 환수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제9조)
- 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사.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아.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청년기본법」
-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 다. 입법예고(2026.1.20.~1.25.) 결과: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본 제정안은 「청년기본법」 제18조1)의 청년 창업 지원 의무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2)의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 구(區) 청년 상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총 1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됨.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 정의 등 총칙을 규정하였으며, “청년상인”의 정의 기준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를 인용하여 명확히 설정함.
  -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육성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1) 제18조(청년 창업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제16조(청년상인의 육성)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하여 청년상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안 제10조부터 안 제12조에서는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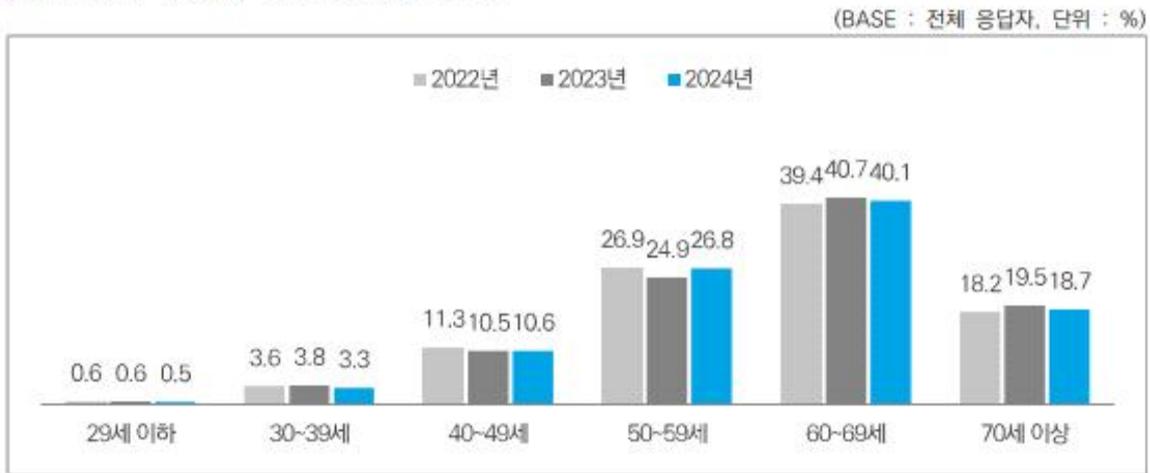
조	제 명	내 용
제1조	목적	청년상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제2조	정의	연령상 기준: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 지원대상: 「전통시장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사람으로 영등포구에 위치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청년상인 육성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 의무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타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본 조례를 따름
제5조	청년상인 육성계획	육성계획 수립 의무 - 기본방향과 목표 - 육성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 -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발전 전략
제6조	청년상인 지원사업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사업 -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경영교육 - 창업 컨설팅 교육 -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화 및 상품화 지원 - 소통, 교류 활성화 및 상생협력 지원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제7조	업무의 위탁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 위탁 가능
제8조	지원사업의 평가	지원사업 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차년도 육성계획에 반영
제9조	환수	요건 미충족,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제10조	실태조사	청년상인 활동 현황 및 실태 조사 가능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민·관·학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가능 언론기관 등과 협력해 홍보활동 지원 가능
제12조	표창	「영등포구표창조례」에 의거 표창 가능

### ○ 검토 결과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행한 “2024년 기준 전통시장·상점가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전통시장 내 점포주의 평균 연령은 60.7세로 나타났으며, 본 조례안의 정책 대상인 39세 이하의 청년상인은 2024년 기준 전체의 3.8%에 불과해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이는 지속가능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청년상인 유입과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함.

[ 그림 104 ] 전통시장 점포주 연령별 분포 현황



- 이러한 배경 하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재)전통시장육성재단을 청년상인 육성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청년상인 교육지원, 도약지원, 판로지원, 축제 개최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 하고 있으며, 「청년기본법」 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서는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사업추진의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특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sup>3)</sup>에

3) 제16조(청년상인의 육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하여 청년상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창업에 따른 임대료 및 점포개선 지원
2. 창업을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 및 창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3. 창업 성공사례 발굴·포상 및 홍보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상인에 대하여 △임대료 및 점포개선 지원, △교육, 컨설팅 지원 및 창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성공 사례 발굴·포상 및 홍보, △청년상인의 조직화 및 협업 지원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에서는 이러한 상위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경영교육, △창업 컨설팅 교육, △사업 아이디어 사업화 및 상품화 지원, △소통, 교류 활성화 및 상생협력 지원 사업 등 주요 내용을 지원사업으로 구성하여 상위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청년상인 육성을 구체화한 것으로, 상위법 위반 소지는 없으며 법체계상 정합성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4. 청년상인의 조직화 및 협업 지원

5. 그 밖에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업

# 참 고 자 료

##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제16조(청년상인의 육성)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하여 청년상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창업에 따른 임대료 및 점포개선 지원
2. 창업을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 및 창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3. 창업 성공사례 발굴·포상 및 홍보
4. 청년상인의 조직화 및 협업 지원
5. 그 밖에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업

## 2 청년기본법

### 제18조(청년 창업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